

[별표 3] <개정 2008.7.24>

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·설치지역·설치조건(제18조제2항관련)

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	설치지역	설치조건
1.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등과 관련된 시설		
가. 임도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·시설기준
나.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(주거용 을 제외한다)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
다.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 미터 미만일 것
라. 임산물을 가공·건조·보관 하기 위한 시설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 미터 미만일 것
마. 비료·농약·기계 등 임업 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 미터 미만일 것
바. 운재로 및 작업로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배향곡선 지·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.
사.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설	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 한 산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 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 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(1)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·판매·가공·이용시설 (2)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 설, 산림문화회관
2.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 급대책과 관련된 시설,병해충의	제한없음	(가)산불감시탑·방화선·간이무선통신 시설·간이저수조·간이헬기장 그 밖

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·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		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(나) 재해예방·재해복구·재난수습을 위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(다)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·관리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
3. 수목원·자연휴양림·산림욕장·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·전망대시설·수목장림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·신고된 수목장림 구역을 말한다) 및 자연관찰원·산림전시관·목공예실·숲속교실·숲속수련장·산림박물관·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	제한없음	(가) 자연휴양림·산림욕장·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찰원·산림전시관·목공예실·숲속교실·숲속수련장·산림박물관·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(나) 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(다) 「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
4.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	제한없음	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·학부 등이 설치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5.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	준보전산지	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.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6.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설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

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		급미터 미만일 것
7.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	제한없음	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. 다만, 연구·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8.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,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	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	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부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
9. 가축의 방목	준보전산지	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
10.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	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「문화재보호법」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일 것
11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가. 관상수의 재배 나. 그 밖의 품목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.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(1)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. 다만,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·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·약초류(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

		따른 산나물류·약초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(가) 공익용산지의 경우: 5만제곱미터 미만(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) (나)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: 제한 없음 (2)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12. 물건의 적치	준보전산지	제12조제11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
13.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 가. 누에사육시설 나.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다. 농축수산물의 창고·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.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. (1)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(2)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.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. (1)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

		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(2)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 (3) 수산물의 창고·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
라. 농막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
마.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한다)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
바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	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
사. 농업용수 개발시설	산지전용제한지역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,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

※ 비고 : 「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제1호·제5호·제6호·제9호·제11호·제12호 및 제13호 (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외한다.